

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7월 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간 업무의 유사·중복 문제를 해소하고,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·복합 도시과학 정책 연구기관으로 신설되는 통합연구원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통합연구원인 서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.

## 2. 주요 내용

- 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,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으며,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(안 제2조).
- 연구원은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·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·기술개발·연구,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,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함(안 제3조).
- 연구원은 서울시의 출연금, 연구원 사업 수익금, 그 밖의 수입을 재

원하고,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 서울시는 출연금 교부, 재산 출연 등을 할 수 있음(안 제4조).

- 연구원은 중요사항의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이사회와 감사(2명)을 두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고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8조).
- 시장은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함(안 제10조).
-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따라 「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-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, 선임직 이사·감사는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이 가능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(정원외 직원 포함)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,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,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름(안 부칙 제3조)